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8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6. 5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 정비
 -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변경함(안 제17조)
: 사용허가일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
→ 사용허가를 받은 날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, 제21조, 제2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5. 5. 2. ~ 5. 22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무상사용기간)</p> <p>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<u>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</u> <u>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7조(무상사용기간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사용허가를 받은 날</u> <u>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7조(기부채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

2. (생략)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~ ⑤ (생략)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
3. ~ 4. (생략)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(年數)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(이하 “지식재산”이라 한다)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. <신설 2015. 7. 20.>

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. 다만,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0.>

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,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5. 7. 20., 2022. 4. 20.>